■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별지 제2호서식] < 제정 2025. 00. 00. >

화재안전성 사전확인 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신청 건에 대하여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 등을 사전 확인합니다.

대상물 현황	대상물		용도
	소재지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규모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해당 [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복도의 유효너비 기준을 미충족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소방서장의 화재안전성 인정이 필요한 경우
	비해당 [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복도의 유효너비 기준을 충족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소방서장의 화재안전성 인정이 불필요한 경우
사전확인 기타 의견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 등 사전 확인 결과입니다.

년 월 일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